

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0. 12. 8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- 처분대상자 : 50㎡ 이상의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 중 카페
 - 프랜차이즈형 카페*

*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

-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

-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
-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

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은 제외

-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 〈의무화된 방역지침〉

관리자·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▶ 방역관리자 지정 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 ▶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8.(화) 00:00 ~ 12. 28.(월) 24:00까지(3주간)

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
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8.

대전광역시



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0. 12. 8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- 처분대상자 : 50㎡ 이상의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 중 식당
 -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
 -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
 -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응 음료*를 판매하나,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,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
 - 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
 -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
(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)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(의무화된 방역지침)

관리자·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 ~ 익일 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▶ 방역관리자 지정 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 ▶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8.(화) 00:00 ~ 12. 28.(월) 24:00까지(3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8.

대전광역시



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0. 12. 8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- 처분당사자 : 뷔페전문점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(의무화된 방역지침)

관리자 · 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 ~ 익일 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▶ 방역관리자 지정 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 ▶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 ▶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▶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▶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▶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8.(화) 00:00 ~ 12. 28.(월) 24:00까지(3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8.

대전광역시



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0. 12. 8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- 처분대상자 : 50㎡ 이상의 일반음식점중 브런치 카페, 베이커리 카페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〈의무화된 방역지침〉

관리자·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 ~ 익일 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▶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,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▶ 방역관리자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 ▶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8.(화) 00:00 ~ 12. 28.(월) 24:00까지(3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8.

대전광역시

